

학술지 「한국교육」 윤리지침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2008. 6. 1 제정
2011. 4. 15 개정
2012. 2. 20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지 「한국교육」 발행지침 제6조 2항에 의거해 학술지 「한국교육」의 윤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학술지 「한국교육」에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하여 발간과 관련된 제반 행위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윤리) 연구자(투고자)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로서, 민주주의의 이념 아래 학문적 수월성과 진정성을 추구해야 하며, 제반 연구활동에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학자적 양심에 기초해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 자료 등의 중복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 연구자료 및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와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자기표절’ 행위도 포함한다.(표절과 관련한 부가 정의 및 적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 등의 중복사용: 이미 발표된 자료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투고 등)

1. 투고 및 게재 논문은 원저에 한한다.
2. 국내외 학술지나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3. 분할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논문의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편집위원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술지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윤리지침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①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편집위원회 및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 ④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제4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의 접수와 이에 관계된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 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 ⑦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의 개시) ①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에 개시된다.

- ②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진실성 검증 대상)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본조사) ①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제16조(연구진실성에 대한 입증)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및 반론 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연구진실성에 대한 판정) ①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18조(연구진실성에 대한 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6. 관련 증거 및 증인
-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 ③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와 학술지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 및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이 밖에 「한국교육」 편집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⑥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의)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조(윤리지침 준수 협약서) ① 학술지 「한국교육」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요구

하는 제반 윤리지침을 준수할 것을 밝히는 「한국교육」 윤리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윤리지침 준수 약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②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별지서식 1)의 윤리지침 준수 약속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한국교육」 윤리지침 준수 약약서

1. 연구자명단

연구참여자	소속기관

2. 논문제목

위 논문에 참여한 연구자로서 학술지 「한국교육」에 투고하면서 연구자의 윤리와 진실성에 관해 학술지 「한국교육」 윤리지침을 숙지하고 확인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이 요구하는 제반 지침을 준수할 것을 약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연구자: (인)